



##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 8. 4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2006. 2. 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의원의 직무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보상지급 기준을 현재 군의회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도의회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코자 함이었습니다.
- 그리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6. 질의 및 답변 : 없음

## 7. 토 론 : 없음

##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